ADNDRC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seoul

결 정 문

사건번호: KR-1600137

신 청 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피신청인: Ymir(이미르)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 청 인: 롯데쇼핑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골드 7층

피신청인: Ymir(이미르)

서울특별시

분쟁 도메인이름은 "lottemartmall.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아이네임즈(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IT벤처타워 13층 동관 1301호)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6. 1. 15.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6. 2. 16.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6. 2. 16.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6. 2. 16.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6. 2. 17.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6. 3. 8.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16. 3. 8. 피신청인은 그 어떤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다.

2016. 3. 16.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도두형 위원을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같은 날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16. 3. 21.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생활용품, 식품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로서 설립 초기에는 일반 매장에서 판매 영업을 하였으나, 2005. 9. 27.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메인이름 www.lottemart.com을 사용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였고, 2007. 2. 1. 서울지역 3개 점포를 시작으로 인터넷을 통한 상품 주문 판매 및 배송을 시작하였고 점차 이러한 통신 판매를 다른 매장에도 확대하였는데, 2007년말 현재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56개에 이르렀다.

신청인은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형할인점 부문에서 5년간 연속하여 국내 1위를 차지하였다.

신청인은 www.lottemart.com 외에도 2007. 8. 20. 도메인이름 '롯데마트몰.biz'를 등록 받았다.

신청인은 '롯데마트' 표장에 대하여 상품류 제3류, 지정상품 립스틱, 선스크린로션, 향수 등 8개로 하여 2002. 7. 8.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2004. 2. 5. 상표등록을 받았고(등록번호: 제573663호), 'LOTTE Mart' 표장에 대하여 서비스업류 제35류, 지정서비스업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으로 하여 2012. 1. 3.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하여, 2013. 5. 2. 서비스표 등록을 받았다(등록번호 제257829호).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 lottemartmall.com에 대하여 2012.

7. 22. 등록을 받았다.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접속하면(조정인 접속시점: 2016. 4. 19. 13:00), www.ymir.co.kr로 포워딩되며 이 웹사이트에서는 시인(詩人)으로 소개된 김기증이라는 인물의 사진과 함께 동인의 핵심 인생경영 철학이 설명되어 있고, 아울러 동인이 저작한 것으로 보이는 전자책과 넥타이 등의 소개되어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신청인은 국내외에 200개가 넘는 점포를 가지고 있고 '롯데마트' 및 'LOTTE Mart' 표장에 대하여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갖고 있으며, 도메인이름 lottemart.com 및 롯데마트몰.biz도 등록 받았다.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및 서비스표 그리고 도메인이름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접속하면 분쟁 도메인이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웹사이트로 포워딩되고 이 곳에서 물품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피신청인은 저명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와 유사한 분쟁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피신청인의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

피신청인은 달리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ⅰ)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피신청인의 분쟁 도메인이름 'lottemartmall.com' 은 'lottemartmall' 및 '.com' 으로 분리되어 관찰된다고 할 것인데, '.com' 은 도메인이름을 분류하는 확장자에 불과하므로 분쟁 도메인이름 중 'lottemartmall' 만이 비교관찰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lottemartmall' 는 'lotte' , 'mart' 및 'mall' 로 분리되고 그 중 'mart'는 시장을, 'mall'은 나무 그늘이 있는 길 또는 상점가를 각 의미하는 일반명사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고 'lotte' 가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이 2004. 2. 5. 상표등록을 받은 '롯데마트' 표장은 '롯데'와 '마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 요부는 '롯데'라고 할 것인데, 이를 위 'lotte' 와 대비하여 보면, 영문자와 한글이라는 차이 외에는 그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이 사건 '롯데마트'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생활용품, 식품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로서 설립 초기에는 일반 매장에서 판매 영업을 하였으나, 2005. 9. 27. 공정거래위원회에 www.lottemart.com을 사용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였고, 2007. 2. 1. 서울지역 3개 점포를 시작으로 인터넷을 통한 상품 주문 판매 및 배송을 시작하였고 점차 이러한 인터넷 판매를 다른 매장에도 확대하였는데, 2007년말 현재 전국에서 운영하는 매장이 56개에 이른 사실, 신청인은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형할인점 부분에서 5년간 연속하여

국내 1위를 차지한 사실, 신청인은 www.lottemart.com 외에도 2007. 8. 20. 롯데마트몰.biz를 등록 받은 사실, 신청인은 '롯데마트' 표장에 대하여 상품류 제3류, 지정상품 립스틱, 선스크린로션, 향수 등 8개로 하여 2002. 7. 8.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2004. 2. 5. 상표등록을 받았고(등록번호: 제573663호), 'LOTTEMart' 표장에 대하여 서비스업류 제35류, 지정서비스업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으로 하여 2012. 1. 3.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하여, 2013. 5. 2. 서비스표 등록을 받은 사실(등록번호 제257829호)이 인정되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형할인점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신청인이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장기간 국내 1위를 차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명칭 및 신청인 상표 및 서비스표가 2007년 이전에 이미 저명성을 취득하고 있다고 인정됨에 비하여,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 lottemartmall.com 또는 그 요부인 'lotte'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하거나 기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요부인 'lotte' 와 극히 유사한 신청인의 'LOTTE Mart' 표장 및 '롯데마트' 표장은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 받을 당시 이미 국내에서 저명성을

취득하고 있었던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이 속하는 기업 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접속하면 www.ymir.co.kr로 포워딩되며 이 웹사이트에서는 시인(詩人)인 것으로 보이는 김기증이라는 인물의 사진과 함께 동인의 핵심 인생경영 철학이 설명되어 있고, 아울러 동인이 저작한 것으로 보이는 전자책과 넥타이 등의 소개되어 있을 뿐이고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위 저명 표장들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향후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 받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lottemartmall.com>을 이전할 것을 것을 결정한다.

1인 행정패널

도두형

결정일: 2016년 4월 20일